

준법감시요강

제 정 : 2009. 2. 24

1차 개정 : 2017. 11. 24

2차 개정 : 2019. 12. 20

3차 개정 : 2022. 4.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정(이하 “법규”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준법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사업무와 관련된 대내외 업무처리 및 거래행위에 대한 준법감시에 관하여는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법감시”란 사업운영상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법규에 대한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대응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 “준법감시담당부서”란 법규준수체계를 구축하고 준법감시를 위한 일련의 활동 계획을 실행·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준법감시원”이란 소속 부서, 지사, 출장소, 사장 또는 본부장 직할로 운영하는 팀 (이하 “부서”라 한다)의 법규준수업무를 수행하도록 부서장, 지사장, 출장소장 또는 팀장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5. “준법감시 공통업무 체크리스트”란 정기점검 시 각 부서의 법규준수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이행항목을 선정하여 목록화한 것을 말한다.
6. “준법감시 고유업무 체크리스트”란 정기점검 시 각 부서의 고유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 이행사항 세부점검 항목을 선정하여 목록화한 것을 말한다.
7. “부서별 준수대상 법규기준 목록”이란 각 부서의 업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목록화한 것을 말한다.
8. “경제제재 대상자”란 국내외 경제제재 법령에 따라 제재 업무 담당 기관이 발표하여 시행 중인 제재 대상자 리스트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준법감시 조직 및 역할

제1절 통칙

제4조(준법감시 조직 및 역할) 준법감시를 위한 조직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공사의 준법감시업무를 기획·총괄한다.
2.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준법감시업무를 관장한다.
3. 준법감시원은 소속 부서장을 보좌하여 법규준수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준법감시담당부서

제5조(준법감시담당부서의 직무)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업무 기획 및 입안
2. 법규준수 여부 운영실태 점검 및 시정요구·보고
3. 법규준수 관련 매뉴얼 발간 및 관리
4.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5. 주요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 감시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감시 절차) ①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감시는 최종 결재권자에게 결재 상신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부서는 사전감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③ 사전감시 결과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토의견을 요청부서로 보내고, 요청부서는 해당 의견서의 내용을 업무진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감시 대상) ①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있어서 법적위험에 대한 사전감시를 수행한다.

1. 「계약요강」에 따른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주요 내용의 변경. 다만, 정기적인 것으로 주요내용의 변경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2. 내규 및 약관의 제정·개정·폐지
3. 신종보험종목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4. 법무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소송과 중재
5. 법규 및 약관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한 대외회신공문(전자적 형태의 공문을 포함한다).
6. 공사의 법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외자료(대외발간자료·강의자료 및 보도

자료 등으로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포함한다)

7. 중장기 금융성 중목의 인수 관련 경제제재 준수 여부

8.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이라 한다)이 발표한 SDN 목록(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에 등재된 기업 및 은행에 대한 보상·회수 관련 경제제재 준수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법적위험에 대한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자문의 검토를 거친 사안 등 추가적인 법적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감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내부통제자문역)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준법감시업무 자문·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통제자문역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법규준수 점검 및 조사)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규준수 실태의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분기별로 부서별 법규준수 업무 운영실태 및 교육 실시여부
2. 특별점검: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제제재점검: 다음 각 목의 경제제재 대상자
 - 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자
 - 나. OFAC이 발표하는 SDN 목록에 등재된 자
 - 다. 그 밖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정기점검의 수행) ① 제10조제1호의 정기점검은 각 부서의 준법감시원이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매분기 1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준법감시 공통업무 체크리스트 및 준법감시 고유업무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2. 준법감시담당부서에서 배포한 자료 등을 통한 정기교육
3. 부서별 준수대상 법규기준 목록의 파악·정리

② 각 부서의 준법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준법감시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준법감시 고유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담당부서는 준법감시 공통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점검항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점검의 수행) 제10조제2호의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법규의 준수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질문서 및 체크리스트를 포함한다) 또는 현지방문 조사
2. 법규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이나 특정의 점검부문 업무 항목을 추출하여 시행

제13조(경제제재점검의 수행) 제10조제3호의 경제제재점검은 준법감시담당부서가 경제제재 대상자 목록을 매월 점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서는 5영업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법규준수 지도 및 자문) 준법감시담당부서는 법령 등의 제정·개정 및 감독기관의 개선요구와 관련한 소관부서의 법규준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절 준법감시원

제15조(준법감시원의 지정) ①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일반직 3급 이상의 자로서 업무 지식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법규준수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법감시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이 없는 부서는 4급 이하의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준법감시원이 인사발령으로 이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규준수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직원을 준법감시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원의 지정은 업무분장명령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 준법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부서장의 준법감시업무 보좌
2. 법규준수와 관련한 소속 부서 직원의 교육·상담 및 지도
3. 소속부서의 업무관련 법적위험 발견시 부서장에게 보고
4. 정기점검 등 준법감시업무 수행 현황 및 결과의 준법감시담당부서에 보고

제3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17조(위반사항의 보고) ① 준법감시원은 소속 부서 직원의 법규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법규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법규위반사항을 보고받은 부서장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원은 제1항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보고내용의 처리)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17조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점검·조치하거나, 감사실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위반사항의 조치)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보고받은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처리 절차의 하자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시정요구 및 개선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실태점검 결과의 처리)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 및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은 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21조(법규준수를 위한 협의·자문) ① 부서장 및 준법감시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 또는 준법감시담당부서장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부서는 준법감시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법규준수와 관련하여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보상 등) ①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준법감시원의 준법감시업무 실태 등 각 부서의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준법감시원의 준법감시업무 활동실적이 뛰어나거나 법규위반을 사전에 방지 또는 감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원에 대한 포상 등을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책임 등) ①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법규준수업무를 자기의 고유 업무로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준법감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 한다.

제24조(서식의 제정) 이 요강 시행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내용 및 서식의 제정 ·개정·
폐지는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정)

이 요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요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요강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요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에 따른 사장 또는 본부장 직할로 운영하는 팀의 준법감시원의 지정 및 정기점검의 수행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